



4th Salesman Work Shop '2001(제 1강의)

수출 농수산물 골판지상자의
품질개선을 위한 지원제도

강사 : 신 광 수

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개발 1팀장

우리 조합에서 4월 21, 22일 실시한 제4회 판매정책연수대회시 발표한 내용 중 일부를 게재하여 강의내용 중『농수산물 수출동향』①수출실적 ②품목별수출현황 (과실류, 화훼류, 김치, 인삼류, 채소류, 축산물, 가공식품)부분은 지면 관계상 줄이고 품질개선을 위한 지원제도 부분만을 발췌하여 게재합니다. 세부사항이 필요하신분은『제4회 골판지포장공업 판매정책 연수대회』자료집을 편집실로 연락주시면 실비로 제공합니다.

■ 수출포장개선을 위한 지원 현황

1.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지원

□ 지원목적

- 수출농산물 포장디자인의 선진화 및 현대화로 수출상품성 제고

□ 지원 자격요건

- 수출용 농산물의 포장 및 용기디자인을 개발·개선코자 하는 농산물 및 가공식품 생산 또는 수출업체로서 전년도('00) 해당품목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
- 신기술이나 신상품 개발업체, 정부지정 벤처기업 등 해당품목의 수출실적은 없으나 유망한 수출계획(신용장, 계약서 등)이 있는 신규업체
- 전년도('00) 지원실적이 있거나 제재기간중인 업체는 제외

□ 지원분야 및 범위

- 포장디자인 : 상품성 제고 및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제품 포장상의 Copy문구 색상, 표기 사항 등 외관디자인을 개선하는 경우
- 용기디자인 : 유리병, PET 및 난좌 개발 등 금형의 제작이 수반되는 용기디자인의 개선

□ 지원기준



- 총 개발비의 70%를 지원하되 1품목당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
- 품목당 지원한도

| 구분 | 총 개발비(기준) | 품목당 지원한도 |
|----|-----------|----------|
| 포장 | 5,000천원 | 3,500천원 |
| 용기 | 30,000천원 | 21,000천원 |

* 1업체 1품목 지원을 원칙으로 함

지원형태 및 규모

| 분야 | 계 | 포장 | 용기 | 비고 |
|------|------|------|-----|--|
| 정규지원 | 58품목 | 50품목 | 8품목 | 정규지원 접수기간중 신청 가능 ※ 포장 6품목, 용기 1품목은 신규 업체 선정 |
| 수시지원 | 10품목 | 10품목 | - | 포장디자인 개발, 개선 필요시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 |
| 계 | 68품목 | 60품목 | 8품목 | |

지원대상 선정기준

- 농림부지정 20대 수출전략품목 및 관련 가공제품 등
- 해당품목의 전년도 수출실적(70%) 및 해외시장개척노력도(30%) 평가

신청접수 및 구비서류 등

- 신청접수 기간: '01.3.28 ~ 4.11(15일간)

연락처

- 본사 수출진흥처 수출조성팀 (02-798-5031)

2. 수산물 포장디자인 개선지원

지원 목적

- 수출수산물 포장디자인의 선진화 및 현대화로 수출상품성 제고

지원 자격요건



- 수출용 수산물의 포장디자인을 개발·개선코자 하는 수산물 및 가공식품 생산 또는 수출업체로서 전년도('00) 해당품목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
- 신기술이나 신상품 개발업체, 정부지정 벤처기업 등 해당품목의 수출실적은 없으나 유망한 수출계획(신용장, 계약서 등)이 있는 신규업체
- 전년도('00) 지원실적이 있거나 제재기간중인 업체는 제외

지원분야 및 범위

- 상품성 제고 및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제품 포장상의 Copy문구, 색상, 표기사항 등 외관 디자인을 개선하는 경우

지원기준

- 총 개발비의 70%를 지원하되 1품목당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
- 품목당 지원한도

| 구분 | 총 개발비(기준) | 품목당 지원한도 |
|----|-----------|----------|
| 포장 | 3,500천원 | 2,450천원 |

* 1업체 1품목 지원을 원칙으로 함

지원형태 및 규모

| 분야 | 포장 | 비고 |
|------|------|--|
| 정규지원 | 20품목 | 정규지원 접수기간중 신청 가능 ※ 3품목은 신규업체(2번항 참조) 선정 |
| 수시지원 | 3품목 | 포장디자인 개발, 개선 필요시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 |
| 계 | 23품목 | |

지원대상 선정기준

- 해양수산부 지정 '01년 유망수출업체 및 관련제품 우선 지원
- 신청품목의 전년도 수출실적(70%) 및 해외시장개척노력도(30%) 평가

신청접수 및 구비서류 등

- 신청접수 기간 : '01.4.12 ~ 4.26(15일간)



연락처

○ 수출진흥처 수출조성팀 (02-798-5031)

3. 농산물 판매촉진사업

지원목적

○ 수출물류비 부담의 완화 및 포장개선 등 수출경쟁력 및 상품성 제고

지원규모 : 21,194백만원

지원품목 및 대상

○ 지원품목 : 채소류, 화훼류, 과일류, 김치, 인삼류(신규), 장류(신규), 축산물

○ 지원대상 : 지원품목 수출실적이 있는자 또는 수출품 생산자(단, 수출자와 물류비에 대한 합의서 첨부)

지원기간

○ 2001.3.21 ~ 12.20 ('00.12.21 ~ '01.3.20은 2000년 기준으로 지원)

○ 인삼, 장류는 01.1.1일부터 소급적용

지원방법 : 공사가 산정한 품목별, 지역별 지원단가에 따라 수출실적 확인후 지원

신청절차

○ 지원신청 : 신청대상자가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관할지사에 매월 신청

○ 신청시기 : 매월 10일까지(단, '00.12.21 ~ '01.3.20분은 3월30일 12월분은 12월 23일까지)

○ 신청서류

- 판매촉진비 지원신청서(공사 소정양식)

- 수출면장 및 B/L 원본 및 사본 각 1부(원본은 대조후 반환)

- 계좌입금 요청서(공사 소정양식)

※ 단, 품목별 특성에 따라 부속서류 추가될수 있음

제출처 : 신청자 행정구역 농수산물유통공사 각 지사(소) 수출유통부



| 제 출 처 | 전화번호 | 제 출 처 | 전화번호 |
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|
| 중부지사 | 02)813-4028 | 인천지소 | 032)888-6163 |
| 강원지소 | 033)648-5391 | 충북지소 | 043)267-4747 |
| 충청지사 | 042)488-8544 | 전북지소 | 063)211-6179 |
| 호남지사 | 062)944-2623 | 경북지사 | 053)741-5223 |
| 경남지사 | 051)644-1403~4 | 제주지소 | 064)746-9472 |

※ 사과, 배는 한국농림수산식품수출입조합에 신청

□ 연락처

- 본사 수출개발처 수출개발 1팀(과실류, 화훼류 : ☎ 02-798-8591)
- 수출개발2팀(채소류, 김치, 인삼류, 장류, 축산물 : ☎ 02-796-4044)
- 각지사(소) 수출유통부

□ 품목별 지원 단가(포장, 선별, 운송비의 약 30%선)

(단위 : 원/kg)

| 부류별 | 품 목 | 00년단가 | 일본 | 중국 | 동남아 | 미 국 | 유럽 |
|-----|-------|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채 | 미니토마토 | 182 | 201 | 190 | 214 | 229 | 225 |
| | 토 마 토 | 140 | 180 | 150 | - | - | - |
| | 파프리카 | 242 | 248 | 221 | 245 | 269 | 273 |
| | 오 이 | 87 | 94 | 88 | 168 | 192 | 117 |
| | 가 지 | 130 | 142 | 136 | 156 | 177 | 181 |
| | 딸 기 | 375 | 444 | 412 | 467 | 501 | 507 |
| 소 | 수 박 | 69 | 85 | 72 | 97 | 115 | 118 |
| | 메 론 | 88 | 90 | 84 | 101 | 115 | 118 |
| 류 | 양 배 추 | 59 | 105 | 86 | 123 | 146 | 151 |
| | 냉동딸기 | 52 | 73 | 61 | 86 | 103 | 109 |
| | 단 무 지 | 56 | 75 | 60 | 88 | 105 | 111 |
| | 무 | 77 | 106 | 86 | 123 | 147 | 113 |
| | 밤 호 박 | 72 | 83 | 71 | 96 | 113 | 119 |



| 부류별 | 품 목 | 00년단가 | 일 본 | 중 국 | 동남아 | 미 국 | 유럽 |
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채 소 류 | 양 파 | 80 | 80 | 75 | 90 | 105 | 107 |
| | 절임배추 | 70 | 102 | 83 | 120 | 143 | 110 |
| | 파리고추 | 135 | 324 | 283 | 308 | 347 | 317 |
| | 기타 채소류 | 87 | 94 | - | - | - | - |
| 화 훼 류 | 절 화 류 | 747 | 640 | 884 | 953 | 1,076 | 1,130 |
| | 선 인 장 | 365 | 295 | 296 | 299 | 308 | 307 |
| | 난 류 | 252 | 215 | 216 | 226 | 250 | 246 |
| | 기 타 | 252 | 215 | 216 | 226 | 250 | 246 |
| 과 실 류 | 사 과 | 739 | 595 | 596 | 605 | 616 | 619 |
| | 배 | 281 | 278 | 279 | 292 | 312 | 316 |
| | 단 감 | 305 | 277 | 278 | 284 | 293 | 295 |
| | 포 도 | 365 | 452 | 455 | 484 | 523 | 533 |
| | 복 송 아 | 450 | 431 | 432 | 442 | 458 | 463 |
| | 참 다 래 | 270 | 267 | 267 | 275 | 289 | 292 |
| | 유자생과 | 280 | 333 | 335 | 364 | 404 | 413 |
| | 유자껍질 | 243 | 214 | 215 | 221 | 230 | 232 |
| | 유 자 즙 | 216 | 228 | 228 | 233 | 240 | 242 |
| 유 자 차 | 253 | 275 | 276 | 282 | 289 | 291 | |
| 김 치 | 김 치 | 94 | 86 | 87 | 97 | 133 | 140 |
| 장 류 | 고추장, | - | 30 | 29 | 31 | 63 | 48 |
| | 된장,간장 | | | | | | |
| 인삼류 | 홍삼근 | - | 6,527 | 6,527 | 6,527 | 6,577 | 6,563 |
| | 홍삼제품 | - | 3,126 | 3,126 | 3,126 | 3,176 | 3,162 |
| | 백삼근 | - | 905 | 905 | 905 | 955 | 941 |
| | 백삼제품 | - | 1,362 | 1,362 | 1,362 | 1,386 | 1,372 |
| | 인삼음료 | - | 454 | 454 | 454 | 456 | 470 |
| 축산물 | 돈육,쇠고기, 닭고기 | 30 | | | | | |
| | 계란, 생축 | 35 | | | | | |



4. 현지상품화 사업

목 적

- 해외소비자 기호 및 식관습에 적응할 수 있는 현지화 수출상품 개발
- 신규시장 개척 초기 위험비용 지원을 통한 수출업체의 시장개척 의욕고취

사업범위 및 신청대상자

- 수출상품 개발품목(가공식품, 전통가공식품 품평회입상품목)
 - 신제품개발 또는 기존제품의 품질개선 등 상품개발에서 마켓테스트까지 일괄추진이 가능한 업체
- 수출시장 개척품목(신선농산물, 신선닭고기)
 - 신선농산물 : 일본시장을 제외한 신규시장개척 가능품목
 - 신선닭고기 : 수출대상국 HACCP 인증(취득가능)업체, 컨테이너단위 시험수출 가능업체

지원사항

- 업체모집 : 18개 업체 내외
- 지원규모 : 총사업비의 80%이내(업체당 1개사업 15백만원이내)
 - 사업 투자비용은 업체 자부담 집행후, 사업종료시 정산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

지원분야 및 범위

| 구 분 | 지원분야 | 지원범위 |
|---------------|--|--|
| 상품개발 | - 원재료 샘플구입비 - 상품개발(제품개선) 연구용역비 - 포장재(용기)개발비 - 신제품 종자구입비 - 재배기술 도입 및 지도비 | 상품개발 최소수량 기준 시험수출 또는 마켓테스트실시 조건 시험수출 단위수량 범위내 신선농산물(로얄티제외) 신선농산물 |
| 마켓테스트 시험수출 | - 상품 운송·통관비 - 제품설명 리후렛 제작비 - 시험수출 상장수수료 - 위탁판매 대행수수료 - 마켓테스트 행사장 임차비 - 통역운영요원 고용비 | 국내·외 운송비, 통관비 마켓테스트시(2종류·A4용지 1매기준) 신선농산물 신선농산물 시식·시음, 상담회, 특판전 등 1인(인정기간 : 5일이내) |



※ 동 사업을 2001년 11월 30일까지 종결시킬 수 있는 사업자에 한 함

신 청

제출서류

- 현지화적용 수출상품개발사업 지원신청서(공사 소정양식)
- 사업자등록증사본
- 최근 2개년 수출실적증명원(외국환은행장발행) 또는 수출신고필증사본(원본지참)

신청서교부 및 접수처

- 해당지사 수출유통부

신청서접수 : 2001. 4. 7 ~ 4. 18일(수)까지

연락처

본사 수출개발2팀 (☎ 02-796-4044)

5. 신선농산물 수출상품화 지원

목 적

- 일본시장에 소비수요 및 수출가능성이 있는 품목의 개발수출을 통한 신규 수출수요 창출을 통해 수출확대 유도

2000년 사업추진현황

- 포도, 복숭아, 시클라멘, 카랑코예를 일본도매시장 및 대형유통점에 시험수출 추진

| 품 명 | 산 지 | 수 출 자 | 수출기간 | 중량(kg) |
|-------|-----|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|
| 포 도 | 김 천 | 농협무역 | 6. 21 - 8. 9 | 10,306 |
| 복 송 아 | 장호원 | 썸 머 힐 | 9. 27 - 9.30 | 2,850 |
| 시클라멘 | 파 주 | 나라원에 | 11.15 - 12.15 | 26,100 |
| 카랑코예 | 동 탄 | 나라원에 | 5. 13 - 6. 28 | 693 |
| 계 | - | - | - | 39,949 |

사업추진계획

< 지원계획 >



- 지원대상 : 대상품목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농가와 수출계약을 체결한 수출업체
- 대상품목 : 복숭아, 포도, 시클라멘, 메론, 참외, 산호수
- 지원내용 : 기술지도비, 시험수출비, 관촉행사비 등
- 지원규모 : 품목당 20백만원 내외
- 지원비율 : 총사업비의 80% 이내

< 추진일정 >

- 2001. 4~5월 : 메론, 참외시험수출추진
- 6월 : 포도 시험수출추진
- 9월 : 복숭아 시험수출추진
- 10~11월 : 산호수, 시클라멘 시험수출추진

□ 기대효과

- 수출초기단계의 위험비용 지원을 통해 업체의 적극적 개발수출 참여 유도
- 수출유망품목의 발굴로 수출품목의 다양화를 통한 수출확대도모

□ 연락처

- 본사 일본팀 (☎02-796-4707)

6. 수출물류개선

□ 지원목적

- 수출에서 소비까지의 물류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수출장애 요인 해소

□ 지원규모

- 1개품목 1천만원선

□ 지원품목 및 대상

- 지원품목 : 과일, 채소 등 신선농산물
- 지원대상 : 구미 등 선진제국에 수출실적 및 계획이 있는자



지원기간

- 2001. 4 - 12

지원방법

- 강화상자 제작 및 파렛타이징에 필요한 부대비용

추진신청절차

- 기존시설을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현지 실사후 선정
 - 주요품목별 포장 및 파렛타이징 실태조사
 - 포장개선 및 파렛타이징 품목 선정
 - 적정포장재 및 파렛타이징 계획 수립
 - 포장 및 적재 시범 적재 운용
- 지원대상항목 결정, 사업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

연락처

- 본사 수출개발처 수출개발 1팀(과실류: ☎ 02-798-8591)
- 수출개발2팀(채소류: ☎ 02-796-4044)